# 제8장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1.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과 국제기구

### 가.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

유형물인 동산이나 부동산은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유통이 매우 어렵지만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나 디자인은 무체물이므로 장소를 뛰어 넘 어 이용이 가능하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쉽다. 실제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였던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 외국의 유명제품을 모방한 모조 제품을 제조하여 값싸게 유통시켜서 국가간의 분쟁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어 왔다.

단일화된 지식재산권 관련 협정이 부재하였던 논의 초기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과 산업재산권을 다루는 '파리협약' 등 여러 관련 협약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가 다루어져 왔으나, 그 보호수준이 미흡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국제적 제재수단도 결여되어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는 국제통상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나.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 (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지식재 산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974년 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WIPO의 회원국은 84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3월에 가입하였다. WIPO의 주요 임무는 1)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 2)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 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 3)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기술측면의 원조 실시에 있다. WIPO는 분야별로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의 4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지식재산권 관련 다자간 규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되어 특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마련하였다. TRIPs협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위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WTO 회원국들에게 보다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였다. 종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TRIPs협정은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으며,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다.

## 2. 산업재산권 관련 조약

## 가. 파리협약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국제화의 시초가 된 것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협약은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었는데, 2014년 현재 회원국은 175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80년 2월 1일에 가입하여 1980년 5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협약은 주요 내용으로서 특허 등의 출원이나 등록에 있어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국내 특허권자와 국외 특허권자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 나. 특허 협력 조약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해외 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1970년 체결되어 1978년부터 발효된 다자조약으로 2013년 체약국은 146개국이다. PCT규정에 따라 1회의 국제출원으로 출원인이 모든 PCT체약국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효과가 발생한다. 지정한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받기 전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은 특허획득가능성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지정한 나라에특허심사를 청구함으로써 번역료, 출원비용 및 대리인 선임료 등의 불필요한비용 지출을 방지한다.

#### 다. 특허법 조약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PLT)은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 6월 1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타결되었다. 그 목적은 각 체약국의 특허절차를 통일화하여 출원을 위한 공식적인 과정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2005년 4월 조약이 발효되었고, 2014년 36개국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 라. 상표법조약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이란 세계 각국의 상이한 상표법제를 통일화하고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WIPO주관으로 탄생한 조약으로 1996. 8. 1.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 2. 동 조약 가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완료하고 2002. 11. 25 WIPO에 조약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2003. 2. 25 상표법조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인터넷 발달에 따른 조약의 개정수요 발생과 각국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

화 및 출원인 편익증진을 위해 WIPO 주관으로 기존 「상표법조약」을 개정한 상표법 조약(싱가포르 조약)이 2006. 3.에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16. 7. 1. 싱가포르조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마.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표의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립된 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이후 동 의정서가입을 추진하여 2003년 1월 10일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가입 후 3개월이경과한 2003년 4월 10일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 가입국은 2014년 4월 현재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92개국이다.

## 3. 저작권 관련 조약

#### 가. 베른협약

베른조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brary and Artistic Works)은 1886년 성립된 '문학·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은 기본원칙으로서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소보호의 원칙, 소급효 원칙, 무방식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때 최소보호의 원칙(Principle of Minimum Protection)에 따라 베른협약 동맹국 상호간에 보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동맹국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최소보호의 원칙은 보호받은 저작물과 권리의 종류, 보호기간, 권리의 제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1886년에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8월 21일 가입하였다.

#### 나. 로마협약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은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61년 채택되었으며 고정권, 방송권, 보상청구권 등 최소한의 보호기준 설명에 관한 협약이다. 보호기간은 음반의 경우 고정된 이후부터, 실연과 방송은 실연과 방송된 시점부터 20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8일에 가입하여 이듬해 3월 18일 공표되었다.

### 다. WIPO저작권조약

WIPO저작권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199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1996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 16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보호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WCT는 1886년 채택된 국제저작권보호조약인 '베른협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보강한 것으로, 온라인상서의 저작자 권리(공중전달권)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을 보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 미국・일본・필리핀 등 전 세계 89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24일 WIPO 저작권조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 3개월 후인 6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